

입법평가 툴킷(Toolkit) 개발에 관한 연구

윤 계 형



입법평가 연구 15-17-④

입법평가 툴킷(Toolkit) 개발에 관한 연구

윤 계 형



**입법평가 툴킷(Toolkit)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Impact
Assessment Toolkit**

연구자 : 윤계형(부연구위원)
Yun, Gye-Hyeong

2015. 11. 15.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국내에서는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입법평가 실무에 관한 가이드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영향평가 툴킷 또는 툴박스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국내 입법평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

II. 주요 내용

- 유럽연합의 영향평가 툴박스
 - 규제개선 의 일반적 원칙
 - 영향평가 수행 방법
 - 영향평가, 평가 및 적합성 검토에서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
 - 제안의 시행, 전환 및 준비
 - 모니터링 시행
 - 평가 및 적합성 검토

- 이해관계자 협의
- 방법, 모델, 비용 및 편익
- 영국의 영향평가 툴킷
 - 영향평가 툴킷란 영향평가를 착수하는 단계를 설명하고, 영향평가의 분석을 수행하는 안내를 제공하는 것
 - 영향평가 템플릿과 영향평가체크리스트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입법평가 툴킷의 필요성과 그 구상
 - 입법평가 툴킷은 입법평가 담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평가의 절차 및 단계를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국내 입법평가제도를 도입시 입법평가 툴킷을 개발하여 입법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항목 및 내용에 관한 구상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외국의 영향평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툴킷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 주제어 : 영향평가 툴킷, 입법평가,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영향평가 템플릿 , 규제개선 툴박스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In Korea, there are ongoing discussions on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However, it does not provide a practical guide to legislative evaluation is needed for this discussion.
- This study presents some implications for institutionaliza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through Impact Assessment Toolkit or Toolbox.


II . Main Contents

- The content of the Better Regulation Toolbox in EU
 - General principles of Better Regulation
 - How to carry out an impact assessment
 - How to identify impacts in Impact Assessments, evaluations and Fitness Checks
 - Implementation, transposition and preparing proposals
 - Monitoring implementation

- Evaluations and Fitness Checks
- Stakeholder consultation
- Methods, models and costs and benefits
- Impact Assessment Toolkit in UK
 - Checklist for Impact Assessment
 - The Stages of Impact Assessment Process
 - Impact Assessment Template
- The need for Impact Assessment Toolkit
 - It is necessary to design the Impact Assessment Toolkit for institutionalization of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in Korea

III. Expected Effects

- Being a useful article developing the toolbox of toolkit for the plan and design of legislative evaluation.

 **Key Words** : Impact Assessment Toolkit, Legislative Evaluation,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Impact Assessment Template, Better Regulation Toolbox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9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 2 장 유럽연합 및 영국의 영향평가 툴키트	13
I. 유럽연합의 영향평가 툴박스	13
1. 유럽연합 영향평가의 개요	13
2. 영향평가의 수행 및 절차	14
3. 영향평가의 원칙 및 역할	17
4. 영향평가와 규제적합성 검토	19
5. 유럽연합 영향평가 툴박스의 구성 및 특징	21
II. 영국의 영향평가 툴키트	25
1. 영국 영향평가의 개요	25
2. 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단계	26
3. 영향평가 툴키트(Impact Assessment Toolkit)	35
III. 시사점	41
제 3 장 입법평가 툴키트 개발에 관한 구상	43

I. 입법평가 툴킷의 의의 및 필요성	43
1. 입법평가 툴킷의 의의	43
2. 입법평가 툴킷의 필요성	43
II. 국내 입법평가 툴킷 개발을 위한 과제	44
1. 입법평가의 범위	44
2. 입법평가의 주체	45
3. 입법평가의 단계 및 항목	46
4. 입법평가서의 작성	49
 제 4 장 결 론	 57
 참 고 문 헌	 59

제 1 장 서 론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논의는 독일의 제도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¹⁾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제도에 관한 논의,²⁾ 입법평가

- 1) 박영도,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법제 통권 제531호, 법제처, 2002; 신상환, 독일의 입법과정상 입법평가적용의 구체적 사례분석 및 조망을 통하여 본 한국입법평가의 발전과제, 법제 통권 제540호, 법제처, 2002; 홍완식,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1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02.12; 최윤철, 독일에 있어서의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논의,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3.03.
- 2) 박영도 외, 주요국가의 입법평가관련제도(I)-(V), 한국법제연구원, 2007; 최윤철, 독일과 스위스의 입법평가 사례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정창화, 독일의 입법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홍완식, 독일의 입법평가: 독일 국가규범통제원의 활동과 성과를 중심으로, 입법평가연구 창간호, 한국법제연구원, 2009; 한동훈, 2008년 프랑스 헌법개정과 프랑스의 영향평가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9; 박수현,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9; 이상운, 일본 정책평가제도의 입법평가적 기능, 한국법제연구원, 2009; 김주영, 미국 의회의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입법평가연구 제3호, 한국법제연구원, 2010.9.30.; 한동훈, 프랑스의 영향평가의 기준틀과 적용사례, 입법평가연구 제4호,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윤계형, 유럽연합의 입법절차와 영향평가, 입법평가연구 제5호, 한국법제연구원, 2011; 원소연, 독일 입법평가조직의 성격과 권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윤계형·한동훈, 프랑스 입법평가의 방법론 및 사례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윤계형,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유럽연합-, 한국법제연구원, 2012; 장민선,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영국의 영향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2; 원소연,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독일 연방행정부의 입법평가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2; 김현수,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미국의 의회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2; 김현수,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입법평가 비교제도론1: 미국·캐나다-, 한국법제연구원, 2013; 장민선,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입법평가 비교제도론2: 유럽연합·영국-, 한국법제연구원, 2013; 배건이,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입법평가 비교제도론3: 독일·스위스-, 한국법제연구원, 2013;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입법평가 비교제도론4: 프랑스-, 한국법제연구원, 2013; 박영도, 입법평가에서의 규제비용 측정기법 연구-스위스 건축법의 사례-, 한국법제연구원, 2014; 차현숙·배건이, 독일 「정보보호법의 영향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지침」에 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배건이, 독일의 「연방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사례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박영도, 일본의 입법학연구 동향과 시사점, 입법평가연구 제8

제도화 및 방법론에 관한 논의³⁾ 등 입법평가 전반적인 주제들을 다루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입법평가제도는 법령의 부작용(입법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영향을 포함)이나 입법의 실패 현상을 막기 위하여⁴⁾ 입법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법령안이나 법령이 미치는 포괄적인 영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으로⁵⁾ 그동안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현을 위한 도구들을 개발하여야 할 시점이다.

특히 입법절차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툴키트)을 만들어 제시한다면, 현재 국내의 입법과정 내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입법평가를 수행하여 보다 좋은 법률을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호, 한국법제연구원, 2014; 윤계형,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와 규제적합성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입법평가연구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2014.

- 3)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김수용, 입법평가의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최윤철·차현숙, 환경가치추정 기법의 입법평가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윤광진·김한창·박계관, 입법평가적용을 위한 비용편익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이순태·윤광진·차현숙·윤석진·윤계형·조용준·조영기, 입법평가 가이드라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박영도, 입법평가제도의 전망과 발전방향, 입법평가연구 제2호, 한국법제연구원, 2010; 차현숙, 의원입법의 입법평가와 평가방법론에 관한 소고, 한국법제연구원, 2010; 김주찬 외,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규제영향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0; 조영기, 입법평가를 위한 설문조사기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김수용, 좋은 법을 위한 입법평가 연구의 과제와 논의방향, 입법평가연구 제6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 강현철·이근주·김수용, 입법평가와 정책평가의 비교고찰 및 관계설정 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윤계형·박통희, 김주찬, 홍완식, 입법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강현철, 입법평가 세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강현철·원소연,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12; 차현숙·최혜선,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홍완식 외, 입법(규제)영향분석 모형 및 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14.
- 4) 김대희·강현철·류철호, 입법평가기준과 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166면.
- 5) 김대희·강현철·류철호, 앞의 보고서, 217면.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 유럽연합과 영국에서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의 절차와 도구들에 대한 문서,⁶⁾ 즉, 평가의 흐름을 파악하고 각 단계별 주요사항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한 문서(툴키트, 투박스)들을 중심으로 투키트의 주요내용과 영향평가의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이 과정 안에서 입법평가의 투키트(툴박스)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여 국내에 입법평가제도를 구상하는데 있어 유럽연합 및 영국에서 새롭게 내보인 문서가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입법평가의 투키트 개발을 위하여 유럽연합과 영국의 관련 문서들을 중심으로 입법평가의 투키트는 무엇이고, 투키트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입법평가의 절차에서 투키트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발간된 유럽연합과 영국의 관련 문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선행되었던 연구들을 함께 살펴보고, 국내외 관련 제도들을 관련 법령, 문헌, 인터넷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특히 제2장에서는 유럽연합과 영국의 영향평가⁷⁾의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사점들도 함께 도출하고자 한다.

6) 영국은 2015년 3월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을, 유럽연합은 2015년 5월 “Better Regulation Guidelines”을 발간하였다.

7) 본 보고서에서는 ‘입법평가’와 ‘영향평가’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된다. 필자가 구상하고 있는 입법평가와 유럽연합과 영국에서 사용하는 ‘영향평가’라는 용어는 그 대상이나 범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과 영국의 제도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Impact Assessment(영향평가)’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이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용어에 대한 논의는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연구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제1장 서론

동시에 이 과정 안에서 영향평가의 툴킷(툴박스)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국내에서 입법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입법평가 툴킷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입법평가 툴킷을 개발하는데 있어 입법평가의 범위, 주체, 단계 및 항목, 입법평가서의 작성 등 고려할 만한 사항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고, 국내에 입법평가 제도를 구상하는데 있어 유럽연합과 영국의 영향평가제도가 주는 시사점과 향후 국내 입법평가 툴킷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유럽연합 및 영국의 영향평가 툴키트

I. 유럽연합의 영향평가 툴박스

1. 유럽연합 영향평가의 개요

유럽연합에서 2002년 발간한 “선진입법을 위한 문서(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European Governance : Better Lawmaking)”⁸⁾를 보면,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가 정책입안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 내지는 절차”임을 알 수 있다.⁹⁾ 특히 영향평가의 수행을 위하여 2005년에는 영향평가 가이드라인(Impact Assessment Guideline 2005)¹⁰⁾을 제정하였으며,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리는 유럽연합에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영향평가가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었다.¹¹⁾ 유럽연합 위원회는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영향평가제도는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것이지 이를 대체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¹²⁾ 영향평가 자체가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정책결정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서 “영향평가의 절차적 단계로서 문제분석, 목표의 확정, 정책대안의 수립, 각각 대안에 대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분석, 대안의 비교, 모니

8) European Commission, COM(2002)275, Better Lawmaking, Brussels, 2002

9) 윤계형,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유럽연합-, 한국법제연구원, 2012, 17면.

10) http://ec.europa.eu/governance/impact/docs/key_docs/com_2005_0518_en.pdf(최종접속일, 2012. 7.1.)

11) 윤계형, 앞의 보고서, 23면; http://ec.europa.eu/governance/impact/docs/key_docs/com_2005_0518_en.pdf(최종접속일, 2012. 7.1.)

12) 윤계형, 앞의 보고서, 23면; http://ec.europa.eu/governance/impact/docs/key_docs/com_2005_0518_en.pdf(최종접속일, 2012. 7.1.); 최유진, 입법과정상의 영향평가제도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1, 87면.

터링 및 평가”로 영향평가 단계를 설명하였다.¹³⁾ 이후 2009년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영향평가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¹⁴⁾ 최근 2015년에는 규제개선 가이드라인(Better Regulation Guidelines)을¹⁵⁾ 공표하였다. 이 규제개선가이드라인은 영향평가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계획(준비), 영향평가, 정책의 시행, 모니터링, 평가 및 규제적합성 검토, 이해관계자 협의(consultation)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¹⁶⁾ 실무적으로 보다 상세한 지침을 담고 있는 툴박스(toolbox)를 별도의 첨부문서로 공표하고 있다.¹⁷⁾

2. 영향평가의 수행 및 절차

유럽연합에서의 규제개선은 전체적인 정책 사이클을 포함하고 있다.¹⁸⁾ 정책사이클은 각 단계마다 다수의 규제개선 원칙과 목표, 도구 및 절차들이 존재하며,¹⁹⁾ 이 정책사이클 안에서 영향평가가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3) 윤계형, 앞의 보고서, 23면; http://ec.europa.eu/governance/impact/docs/key_docs/com_2005_0518_en.pdf(최종접속일, 2012. 7.1.)

14) http://ec.europa.eu/smart-regulation/impact/commission_guidelines/docs/iag_2009_en.pdf(최종접속일, 2012. 7.1.)

15) http://ec.europa.eu/smart-regulation/guidelines/docs/swd_br_guidelines_en.pdf (2015.10.30 최종접속일)

16) http://ec.europa.eu/smart-regulation/guidelines/docs/swd_br_guidelines_en.pdf (2015.10.30 최종접속일)

17) http://ec.europa.eu/smart-regulation/guidelines/toc_tool_en.htm(2015.10.30 최종접속일)

18)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2015.5.19., p.5

19)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2015.5.19., p.5

[그림] 유럽연합 정책사이클²⁰⁾



보다 구체적으로 영향평가의 수행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관련 정책 이니셔티브를 담당하는 총국이 주관한다.²¹⁾ 총국은 관련 로드맵을 바탕으로 정책 계획 및 정책 검증 과정에서 가능한 한 빨리 영향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영향평가를 준비하게 된다.²²⁾ 이후의 영향평가 준비에는 다음의 주요 단계들이 포함된다.²³⁾

20)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2015.5.19., p.6
 21)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2015.5.19, p. 17.
 22)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2015.5.19., p. 17.
 23)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2015.5.19., p. 17.

[표] 영향평가의 준비 단계²⁴⁾

- (1) 영향평가 과정을 운영하고 영향평가 보고서를 총괄 준비할 내부그룹(ISG)조직
- (2) 내부그룹의 착수 영향평가 마무리 및 위원회 웹사이트 게재
- (3) 12주에 걸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인터넷 기반의 공개협의를 포함한 내부그룹의 협의 전략 준비
- (4) 데이터, 과학적인 조언, 다른 전문가 견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포함한 모든 관련 증거에 대한 수집 및 분석
- (5) 영향평가 보고서 초안 작성
- (6) 품질 검토를 위해 규제검토위원회에 영향평가 보고서 초안 제출 및 규제검토위원회의 개선을 위한 권고를 감안하여 이를 수정
- (7) 규제검토위원회의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 영향평가 보고서를 정책 이니셔티브와 함께 내부그룹 협의에 제출

위와 같이 영향평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내부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공개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이다. 협의 기간 또한 12주로 정하고 있어 단순히 형식적 협의를 절차상 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이다.

또한 규제검토위원회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성된 영향평가보고서는 규제검토위원회(RSB, Regulatory Scrutiny Board)에서 제안 초안이 첨부된 영향평가 과정의 최종결과를 검토하여 채택하면,²⁵⁾ 최종 영향평가 보고서가 발행되며, 2장의 요약문서 및 채택된 이니셔티브와 함께 공동입법기관들에 제출된다.²⁶⁾ 즉, 영향평가 보고서가 작성

24)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2015.5.19., pp.17-18.

25)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2015.5.19., p.18

26)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2015.5.19., p.18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품질검토를 위한 별도의 인력과 절차를 지원한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3. 영향평가의 원칙 및 역할

영향평가는 종합적이고, 비례적이며,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열려 있으며, 편향적이고 얽고, 위원회의 관련 서비스국들과 함께 준비되며, 정책사이클 내에 자리하고, 투명하며, 품질이 높아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²⁷⁾ 이러한 원칙들은 영향평가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내용적 원칙과 절차적 원칙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급적 개인의 주관적 의견이나 입장을 배제하고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책계획부터 집행단계까지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영향평가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이나 역할이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봄으로써 영향평가의 역할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영향평가가 답해야 할 질문들²⁸⁾

1	무엇이 문제이고 그것이 왜 문제가 되나?
2	왜 EU가 조치를 취해야 하나?
3	무엇을 달성해야 하나?
4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들은 무엇인가?
5	경제·사회·환경적 영향은 어떤 것들이며 누가 영향을 받을 것인가?

27)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2015.5.19., p.18

28)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2015.5.19., p.18

6	효과성 및 효율성(편익 및 비용) 면에서 각기 다른 옵션들을 어떻게 비교하나?
7	모니터링과 이후의 사후평가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나?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영향평가는 아래와 같이 답을 하고 있다.²⁹⁾ 위의 질문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반복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³⁰⁾

첫째, 영향평가는 문제의 존재를 입증하고, 누가 영향을 받는지 파악하며, 문제의 규모를 예측하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며, 유럽연합이 추가적으로 정책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을 평가하면서 시작된다.³¹⁾

둘째, 문제의 존재와 규모, 원인을 확정하고 나면, 영향평가는 회원국들이 단독으로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유럽연합이 조치를 취할 권한(즉, 법적 근거)이 있는지,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29)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2015.5.19., pp. 19-31

30) 다음은 영향평가 과정에 대한 지침이다(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2015.5.19., pp. 17-18).

- (1) 분석의 초점과 깊이를 결정할 때에, 영향평가는 어떤 것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데에 적절한지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배제해야 한다.
- (2) 기존의 정책 체계에 대한 관련 평가결과들은 영향평가의 시작점으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고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위원회의 다른 서비스국들의 전문지식 역시 영향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 (3) 데이터 수집과 영향 분석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특정 요소들에 대한 인풋을 제공받을 수 있다.
- (4) 협의 전략은 영향평가의 모든 주요 이슈들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영향평가 보고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으로 분석의 결론을 확증하고 중대한 차이들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협의의 결과를 요약하는 시놉시스 보고서는 영향평가 보고서에 필수 부속서로서 통합되어야 한다.
- (5)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결론은 적절한 인용과 함께 증거(예, 데이터, 예측, 과학적 발견)로 입증되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또한 참조되어야 한다.

31)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2015.5.19., p.19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³²⁾

셋째, 영향평가는 유럽연합 정책이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 명시해야 한다.³³⁾

넷째, 정책 목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달성될 수 있다. 영향평가는 어떤 방법을 추구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정보에 기반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 및 비교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가능한 옵션들이 확인되고 검토되어야 한다.³⁴⁾

다섯째, 한 세트의 정책 옵션들이 선택되고 나면, 이에 대한 경제·사회·환경적 영향과 누가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활발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³⁵⁾

여섯째, 영향평가는 다양한 영향들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걸친 영향 분포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영향의 비례성 원칙 준수뿐만 아니라 효과성, 효율성 및 일관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옵션들을 비교하여야 한다.³⁶⁾

일곱째, 전체적인 정책 사이클을 염두에 두면서, 영향평가에서는 정책 조치가 실제로 의도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조사하고 해당 정책의 향후 개정이 있을 경우 이를 고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를 어떻게 구성할지 확인해야 한다.³⁷⁾

4. 영향평가와 규제적합성 검토

유럽연합은 법률을 간소화하고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12년 12월 규제적합성프로그램(REFIT)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³⁸⁾ 이 규제적

32)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2015.5.19., p.20

33)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2015.5.19., p.21

34)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2015.5.19., p.22

35)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2015.5.19., p.24

36)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2015.5.19., p.29

37)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2015.5.19., p.30

38) http://ec.europa.eu/smart-regulation/better_regulation/documents/com_2013_en.pdf, European

합성프로그램은 “기업, 근로자, 시민을 위해 간소하고 분명하며 안정적이고 예상 가능한 규제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EU 법 전체를 검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³⁹⁾

규제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은 기존에 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것보다 규제에 대한 개선의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으며, 영향평가와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정책이 아닌 입법안이 그 대상일 경우에는 규제 적합성을 체크하는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향후 국내에도 입법평가 제도를 디자인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표] 규제 적합성 검증을 위한 점검⁴⁰⁾

- 입법 초안이 보충성을 완전히 따르고 있는가?
- 제안이 비례적인가?
- 기본권 헌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가?
- 법률조항 초안이 가능한 한 간결하고 명확한가? 국제기준과의 불필요한 차이를 피하고 있는가? 시행하기 더 쉽게 만들 수 있는가?
- “중소기업 최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었는가? 이니셔티브에서 영세기업들이 면제되는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 법률 조항 초안이 ICT 발전(예, 모니터링 및 정보 보고의 간소화)으로 인한 어려움과 기회를 고려하고 있나?
- 전반적인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다음을 줄이기 위하여 법률 조항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

Commission, Regulatory Fitness and Performance Programme (REFIT): State of Play and Outlook, COM(2014) 368 final, 2014

39) http://ec.europa.eu/smart-regulation/better_regulation/documents/com_2013_en.pdf; 윤계형,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와 규제적합성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입법평가연구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2014, 242면.

40) http://ec.europa.eu/smart-regulation/guidelines/docs/swd_br_guidelines_en.pdf (2015.10.30 최종접속일)

- 중소기업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준수 예상비용
- EU의 분야별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국제 교역,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 국제조약들로 인한 파트너국의 의무와 관련하여 그 국가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규모가 외부를 포함하는 제안인 경우)
- 기타 다른 영향(사회·환경이나 특정 집단, 영토, 회원국, 혁신 등에 미치는 영향 포함)
- 제안의 전반적인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제안된 문서의 효과성과 일관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제안된 법률조항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존재하나?

5. 유럽연합 영향평가 툴박스의 구성 및 특징

유럽연합의 경우 영향평가 툴박스는 규제개선 의 각 절차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며,⁴¹⁾ 툴박스는 규제개선의 일반적 원칙, 영향평가의 수행 방법, 영향평가, 평가 및 적합성 검토(Fitness Check)에서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 제안의 시행, 전환 및 준비, 모니터링 시행, 평가 및 적합성 검토, 이해관계자 협의, 방법, 모델, 비용 및 편익 등 총 6개의 장과 59개의 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툴박스⁴²⁾

규제개선의 일반적 원칙	
1	규제개선의 원칙들
2	규제개선의 증거 수집
3	법적 기초, 보충성 및 비례성

41)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2015.5.19. p.86.

42)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2015.5.19. p.86.

제 2 장 유럽연합 및 영국의 영향평가 툴킷

영향평가 수행 방법	
4	영향평가는 언제 필요한가?
5	영향평가를 위해서 내가 따라야 할 단계들은?
6	지출 프로그램 및 재정적 수단을 위한 영향평가
7	사회적 파트너 합의를 위한 영향평가 요건들
8	영향평가 보고서의 형식
9	비례적인 영향평가는 어떻게 실시하는가?
10	영향평가 맥락에서의 이해관계자 협의
11	문제 분석 방법
12	리스크 평가 및 관리
13	목표 수립 방법
14	정책 옵션들을 파악하는 방법
15	정책 도구 선정
영향평가, 평가 및 적합성 검토(Fitness Check)에서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	
16	영향 파악/심사
17	부문별 경쟁력에 대한 영향
18	리서치 혁신에 대한 영향
19	중소기업 테스트
20	경쟁에 대한 영향
21	내부시장에 대한 영향
22	외부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영향

I. 유럽연합의 영향평가 틀박스

23	ICT, 디지털 경제 및 사회에 대한 영향
24	기본권 및 인권
25	고용, 업무 환경, 소득 분배 및 불평등에 대한 영향
26	교육, 문화, 젊은층에 대한 영향
27	건강에 대한 영향
28	소비자에 대한 영향
29	영토적 영향
30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영향
31	자원 효율성에 대한 영향
제안의 시행, 전환 및 준비	
32	시행계획
33	전환 점검
34	설명서 초안 작성
모니터링 시행	
35	모니터링 구성 및 지표들
평가 및 적합성 검토	
36	평가는 무엇이며 언제 필요한가?
37	평가를 위한 준비
38	계획하기: (5년의) 장기 평가 계획
39	내부운영그룹(inter service steering group) 설립하기
40	평가 로드맵 수립하기

제 2 장 유럽연합 및 영국의 영향평가 툴킷

41	평가 설계하기
42	평가 기준 및 질문 확인하기
43	어떤 주요 영향들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44	평가 맥락에서의 이해관계자 협의
45	평가 실시하기
46	품질평가 완료하기
47	평가 조직실무문서
48	평가결과 배포하기
49	추후 액션플랜
이해관계자 협의	
50	이해관계자 협의 툴
방법, 모델, 비용 및 편익	
51	비용 및 편익의 유형분류 체계(typology)
52	비용 및 편익 평가 방법
53	행정 비용 예측을 위한 표준 비용 모델(Standard Cost Model)
54	할인을 사용
55	정책 옵션 비교 또는 기존의 개입 성과 평가 시 유용한 분석적 방법들
56	영향평가 또는 평가에서 분석적 모델 사용
57	다기준 분석
58	라이프 사이클 분석
59	시각자료의 사용

지면의 한계상 툴킷의 내용을 모두 여기에서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³⁾

첫째, 툴박스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가이드라인을 보다 실무적으로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실무자가 가이드라인과 함께 툴박스를 숙지하여 활용한다면, 영향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향평가 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요령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영향평가보고서를 누가 작성해야 하는지, 무엇을 작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영향분석을 위한 원칙, 분석방법, 분석도구, 이해관계자 협의에 관한 원칙 및 방법 등을 항목별로 각각 제시함으로써 영향평가 과정에서 해당하는 원칙과 방법을 찾아 활용할 수 있다.

II. 영국의 영향평가 툴킷

1. 영국 영향평가의 개요

영국은 1997년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시작으로⁴⁴⁾ 2007년에는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로 제도를 개편하였다.⁴⁵⁾

이후 2011년 영국정부에서 공표한 영향평가 가이드런스(Impact Assessment Guidance)를 보면, 영향평가는 “정책 입안자에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여 정책에 대한 사고를 돕고, 목적을 달성하기

43) 툴박스는 실제로 400면이 넘는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http://ec.europa.eu/smart-regulation/guidelines/toc_tool_en.htm(2015.10.30 최종접속일)

44) 박영도·한귀현,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VI)-영국의 영향평가제도(개정판)-, 한국법제연구원, 2007, 11면.

45) 박영도·한귀현, 앞의 보고서, 12면.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비교형량하며, 제안된 개입의 결과를 이해하기 위한 계속적 과정으로서, 공적, 사적 또는 제3부문, 그리고 환경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의 비용과 편익 그리고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제시함으로써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라고 설명하고 있다.⁴⁶⁾ 이는 앞에서 살펴본 유럽연합에서의 영향평가의 도구적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영국 정부 내에서 사적 부문, 시민사회의 기구 및 공적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규제적 성격’을 가진 모든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요구된다. 즉, 법률, 하위법령 뿐만 아니라 실행 규약이나 지침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그 대상의 범위를 넓게 정하고 있다.⁴⁷⁾

이어 2015년에는 규제개선 매뉴얼(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을 발행하여 규제개선에 관한 가이드스(Guidance)와 영향평가 툴킷(Impact Assessment Toolkit)를 제시하고 있다.⁴⁸⁾ 해당 문서에서는 영향평가의 개요, 영향평가의 개념, 영향평가프로세스, 영향평가의 시기, 영향평가의 원칙, 단계별 체크리스트, 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영향평가서의 공표 등 영향평가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⁴⁹⁾

2. 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단계

영국의 영향평가 툴킷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데, 이는 영국내의 입법에 대한 영향평가 절차에서 단계(step)별로

46) HM Government, Impact Assessment Guidance-When to do an Impact Assessment-, 2011. 8. p.4(장민선,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입법평가 비교제도론2: 유럽연합·영국-, 한국법제연구원, 2013, 23면에서 재인용)

47) HM Government, Impact Assessment Guidance-When to do an Impact Assessment-, 2011. 8., p.6(장민선, 앞의 보고서, 34-35면에서 재인용)

48)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49) id.

체크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⁵⁰⁾⁵¹⁾

(1) 영향평가의 1단계

영국의 규제개선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영국내 입법에 대한 영향평가의 1단계(Step 1)에서는 문제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Identify the problem).⁵²⁾ 이를 위한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Checklist for step 1⁵³⁾

체크리스트 목록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정함
문제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분명히 확인함
관련 전문가(예를 들어, 경제학자)에게 자문을 구함
문제의 범위를 측정함
그 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할 가장 적절한 사람을 고려함

이 단계에서는 경제학 이론이 유용한 역할을 하므로,⁵⁴⁾ 문제를 확인하는데 있어 경제학자 등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규제의

50)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p.62

51) 해당 문서에서는 영국내에서의 입법뿐만 아니라 EU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 단계도 함께 안내하고 있으나, 국내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전자가 더욱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여기에서는 영국내 입법에 대한 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52)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p.62

53)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p.62

54)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p.62

경제적 효율성, 즉 특정 규제가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경제학자의 자문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영향평가의 절차 중 하나로 설정하는 것은 분명 정책결정자(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문제 확인 단계에서부터 객관성을 담보시키는 방안이지만, 자칫 규제의 문제를 경제의 문제로 판단하게 되는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경제적 영향 외에도 사회적 영향, 환경적 영향 등 다른 요소들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영향평가의 2단계

영국의 규제개선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영국내 입법에 대한 영향평가의 2단계(Step 2)에서는 바람직한 목적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pecify desired objectives).⁵⁵⁾ 이를 위한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Checklist for step 2⁵⁶⁾

체크리스트 목록
정책 목적을 분명히 확인함
정책 목적이 달성 가능한 것인지 체크함
결과의 순서를 정함
목표가 SMART임을 보장함

55)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p.63

56) Id.

이 단계에서는 달성가능한 정책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그 정책목표가 SMART(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and Time-bound)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정책목적의 정당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분명한 목적을 설정한다는 것은 사후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의미를 가진다. 설정된 목적에 따라 평가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영향평가의 3단계

영국의 규제개선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영국내 입법에 대한 영향평가의 3단계(Step 3)에서는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대안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Identify viable options that will achieve the objectives).⁵⁷⁾ 이를 위한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Checklist for step 3⁵⁸⁾

체크리스트 목록
초기 단계에서 정책대안들을 광범위하게 모색함
규제의 대안을 고려함
규제에 대한 대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그 대안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함
국내 정책에 대해서는 ‘부작위’ 대안을 포함
개발, 협의 및 최종단계를 통해 대안을 개선함
이해관계인에게 진정한 정책 대안만을 제시함

57)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p.64

58) Id.

이 단계는 규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단계에서 설정한 바람직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대안들을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무엇보다 이해관계인에게 대안을 제시할 때,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대안이 아닌 실제로 규제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채택하여 그 대안만을 제시하도록 하는 점은 비례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영향평가의 4단계

영국의 규제개선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영국내 입법에 대한 영향평가의 4단계(Step 4)에서는 영향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Identify the impacts).⁵⁹⁾ 이를 위한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Checklist for step 4⁶⁰⁾

체크리스트 목록
이슈의 유형에 따라 영향을 확인
영향을 받는 그룹을 확인
필요한 경우 상세한 지침에 대한 자문
관련 지침에 따라 영향에 대한 문서 작성

이 단계는 구체적으로 입법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시작단계로써, 규제의 쟁점에 따라 유형화시키고, 영향을 받는 대상, 즉 수범자의 범

59)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p.65

60)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p.65

위를 확정한다. 이슈의 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는 그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4 단계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영향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영향, 사회적 영향, 환경적 영향에 대한 질문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⁶¹⁾

(5) 영향평가의 5단계

영국의 규제개선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영국내 입법에 대한 영향평가의 5단계(Step 5)에서는 비용 편익의 산정 및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Value the costs and benefits and select best option).⁶²⁾ 이를 위한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Checklist for step 5⁶³⁾

체크리스트 목록
영향을 받는 그룹을 확인함
가능한 한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함
기업의 직접 비용을 분명히 강조함
계량화되지 않는 비용과 편익을 엄격하게 평가함
위험과 민감성 요소들을 파악함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비용 편익 또는 비용 효과성 분석을 사용함

61)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pp.65-67.

62)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p.70

63)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p.70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먼저 수범자의 범위를 파악하여 경제적 영향,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량화되기 어려운 요소들은 별도로 평가한다.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용편익분석이나 비용효과성분석을 활용하는데, 계량화하기 곤란한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의 불명확성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계량화하여 계산한 부분과는 구분하여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평가에서 영향의 요소들을 계량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계량화하여 측정한 결과는 입법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계량화하지 못하는 요소들을 구분하여 별도로 분석하는 것도 무리한 계량화에 따른 측정결과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6) 영향평가의 6단계

영국의 규제개선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영국내 입법에 대한 영향평가의 6단계(Step 6)에서는 집행 및 시행 문제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Consider enforcement and implementation issues).⁶⁴⁾ 이를 위한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Checklist for step 6⁶⁵⁾

체크리스트 목록
정책수행의 책임자와 정책결정자를 확인할 것

64)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p.71

65)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p.71

체크리스트 목록
햄튼원칙(Hampton Principles) ⁶⁶⁾ 을 고려할 것
이해관계인(관계되는 자, 보다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는 자)을 확인할 것

이 단계에서는 누가 정책을 수행할 것인지, 규제당국과 관련 부처는 어떻게 협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책으로 관련된 이해관계자 등을 파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7) 영향평가의 7단계

영국의 규제개선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영국내 입법에 대한 영향평가의 7단계(Step 7)에서는 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된 정책을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Plan for evaluation and evaluate implemented policy).⁶⁷⁾ 이를 위한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Checklist for step 7 - 정책개발단계⁶⁸⁾

체크리스트 목록
Magenta Book ⁶⁹⁾ 을 참고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함
정책을 이행하는 단계 전후에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확정함

66) 해당 보고서에서는 “규제를 실행하는 규제당국과 지방정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규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이준호, 영국의 규제개혁 동향-규제개혁 보고서를 중심으로-,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09, 68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Philip Hampton,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 effective inspection and enforcement, HM Treasury, March 2005).

67)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p.72

68)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p.72

69) 영국의 HM Treasury에서 2011년 4월 발행한 문서로 그린북(Green Book)의 평가

[표] Checklist for step 7 - 이행이후 단계⁷⁰⁾

체크리스트 목록
정책 실행 단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함
기한(예컨대 시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PIR(사후이행검토)를 사용하여 정책을 평가함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이해관계인과 협의함

체크리스트 마지막 단계인 7단계에서는 정책개발단계와 정책 이행 이후 단계의 목록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파악한다. 이행 이후에는 정책 실행단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고 정책을 평가한다.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규제나 입법을 이행·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평가단계에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정보를 수집하여 그를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를 다시 입법에 반영하는 것은 입법평가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담보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입법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데이터 수집 등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이던스(Guidance for evaluation), 즉, 정부 차원의 정책평가를 위한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담고 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magenta-book>(최종접속일, 2015.10.30.)

70)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p.72

3. 영향평가 툴킷(Impact Assessment Toolkit)

(1) 영향평가 툴킷의 개요

영국은 규제개선 매뉴얼에 영향평가 툴킷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툴킷에서는 “영향평가를 착수하는 단계를 설명하고, 영향평가의 분석을 수행하는 안내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잠재적인 규제 영향을 가지는 정책들의 입안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 지침은 규정에 적용되며, 비용편익분석을 포함한 정부에서 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그린북(Green Book)과 함께 읽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⁷¹⁾

또한 영향평가는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무게와 제안된 개입의 결과를 이해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속적인 과정이며, 비용편익 및 제안의 위험성을 제시하여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이다. 즉 장기적으로 공공분야, 산업 분야, 시민사회단체에 미치는 영향, 환경적 영향, 장기적으로 보다 넓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⁷²⁾

(2) 영향평가 프로세스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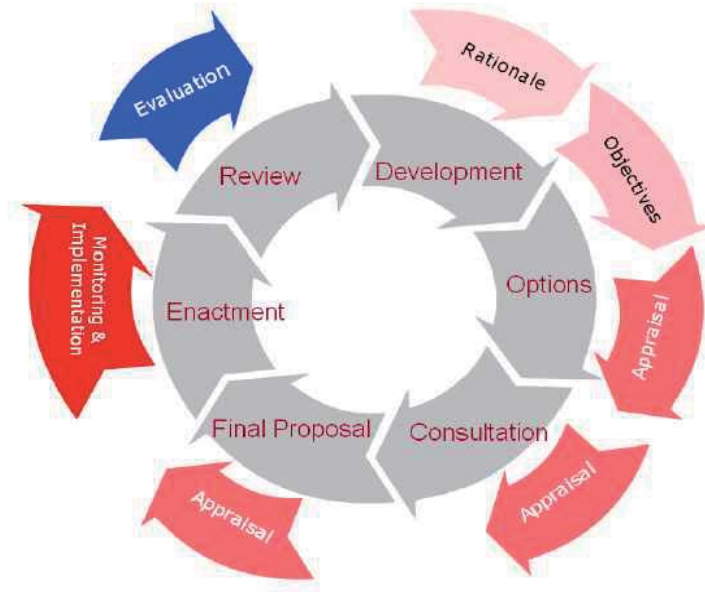
영향평가 프로세스 단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계속적인 순환절차로 이루어지며, ROAMEF(Rationale, Objectives, Appraisal, Monitoring, Evaluation, Feedback)라는 정책 사이클의 단계에 따른다.⁷³⁾

71)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p.56

72)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p.56

73) 여기에서는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p.57~58에서 설명하고 있는 단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영향평가 프로세스 단계⁷⁴⁾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영향평가는 정책개발-정책대안 선택-협의-최종제안-제정-심사-검증의 순환절차를 가지고 있다. 우선 개발단계 (Development stage)에서는 정책 문제의 정의와 정부개입의 근거, 정책 목적의 확인, 증거 수집에 집중해야 하며, 정책대안 선택 단계(Options stage)에서는 대안의 확인 및 개발, 공식적인 협의를 거치기 전에 이해 관계인들의 참여를 통해 이러한 대안들의 검토에 집중해야 한다.⁷⁵⁾ 정책개발단계는 정책사이클 중 확인(Rationale)에 해당하며, 정책개발 단계에서 정책단을 선택하는 단계로 이동하는 단계는 목적(Objectives)에 해당한다. 이후 협의·자문단계(Consultation stage)에서는 공공협의를 통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발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고려된 대안을

74)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p.57.

75)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p.57.

확정하고, 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⁷⁶⁾ 이는 평가(Appraisal), 즉 사전평가 사이클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제안단계(Final proposal stage)에서는 제안할 옵션에 대한 비용과 편익에 집중하여야 하며, 제정 단계(Enactment stage)에서는 의회의 심의 절차에서 초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 법률이나 다른 조치의 최종 내용을 반영하여 영향평가 일부를 수정하여야 한다.⁷⁷⁾ 이 단계는 모니터링&평가(Monitoring & Evaluation)에 해당하므로 사후평가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심사 단계(Review stage)에서는 시행된 정책의 실제 영향을 확인하여 사후적 영향평가 심사서(Post Implementation Review impact assessment)를 발행하여야 한다. 마지막 검증단계(Validation stage)에서는 법안이나 정책안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EANCB(Equivalent Annual Net Cost to Business)에 제공하여야 한다.⁷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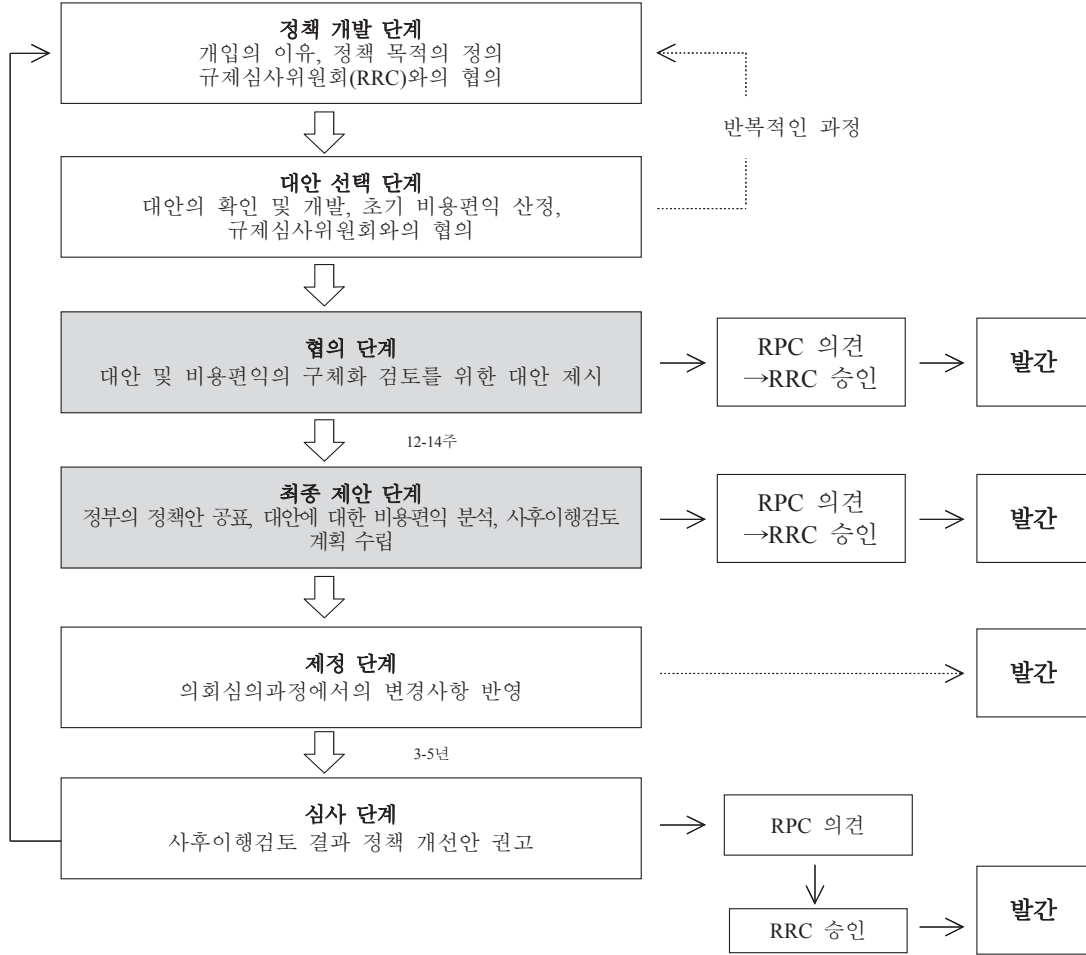
위와 같은 단계의 영향평가를 흐름도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정책개발단계와 대안선택단계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협의단계, 최종제안 단계, 심사단계에서는 규제정책위원회(RPC)의 의견을 거쳐 규제심사위원회(RRC)의 승인을 받은 후 문서가 발간될 수 있다. 즉, 정책개발단계에서부터 심사 단계까지 규제심사위원회(RRC)의 역할은 영향평가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6)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p.57.

77)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p.58.

78)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p.58.

[그림] 영향평가 흐름도(flowchart)⁷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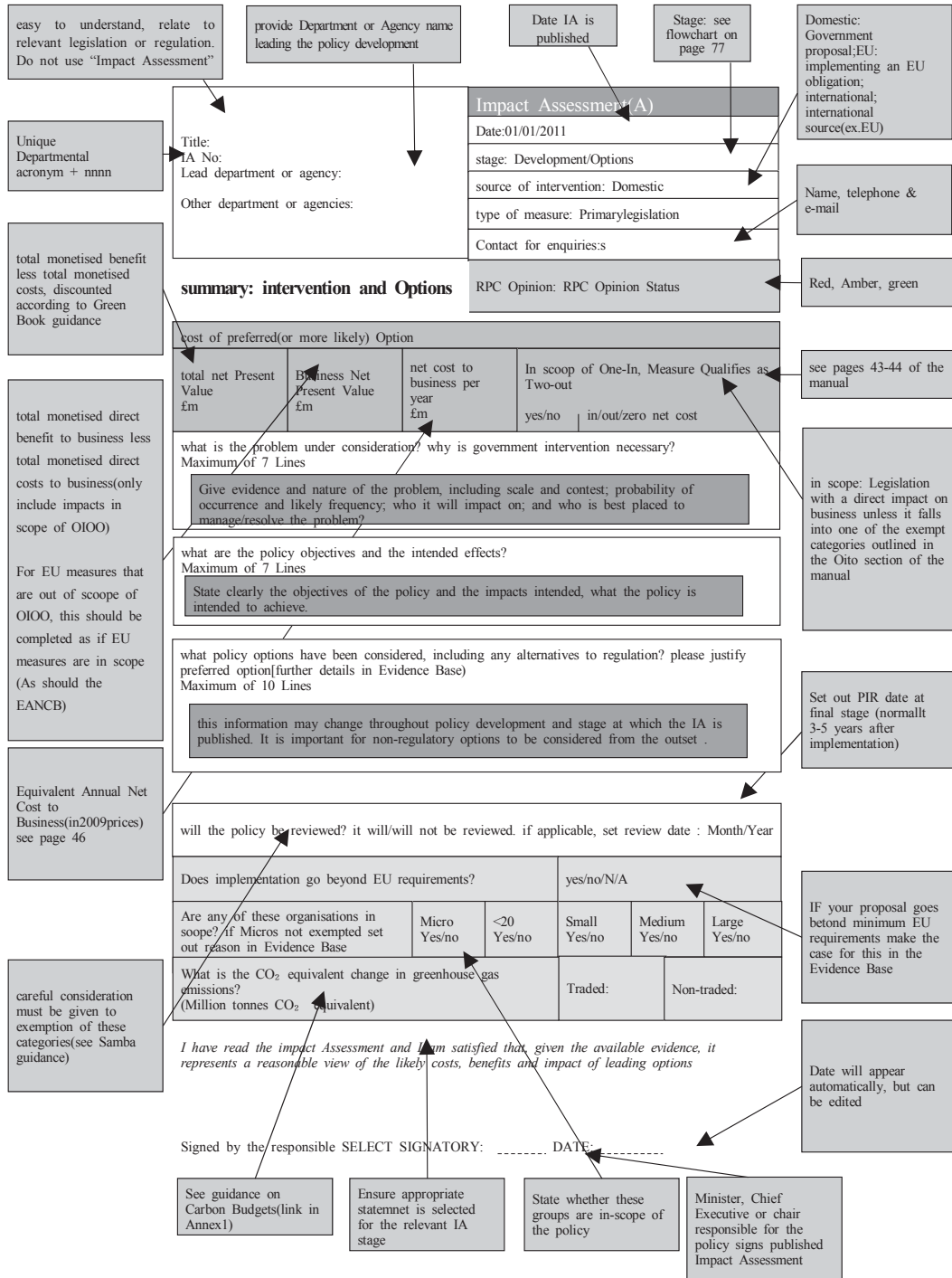
(3) 영향평가템플릿

영향평가템플릿은 올바른 형식의 새로운 영향평가 문서작성을 돕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⁸⁰⁾ 영향평가의 도구 중 하나로 툴킷에 포함되어 있다. 이 템플릿에서는 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작성요령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서식마다 설명이 있어 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유용한 안내가 될 수 있다.

79)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p.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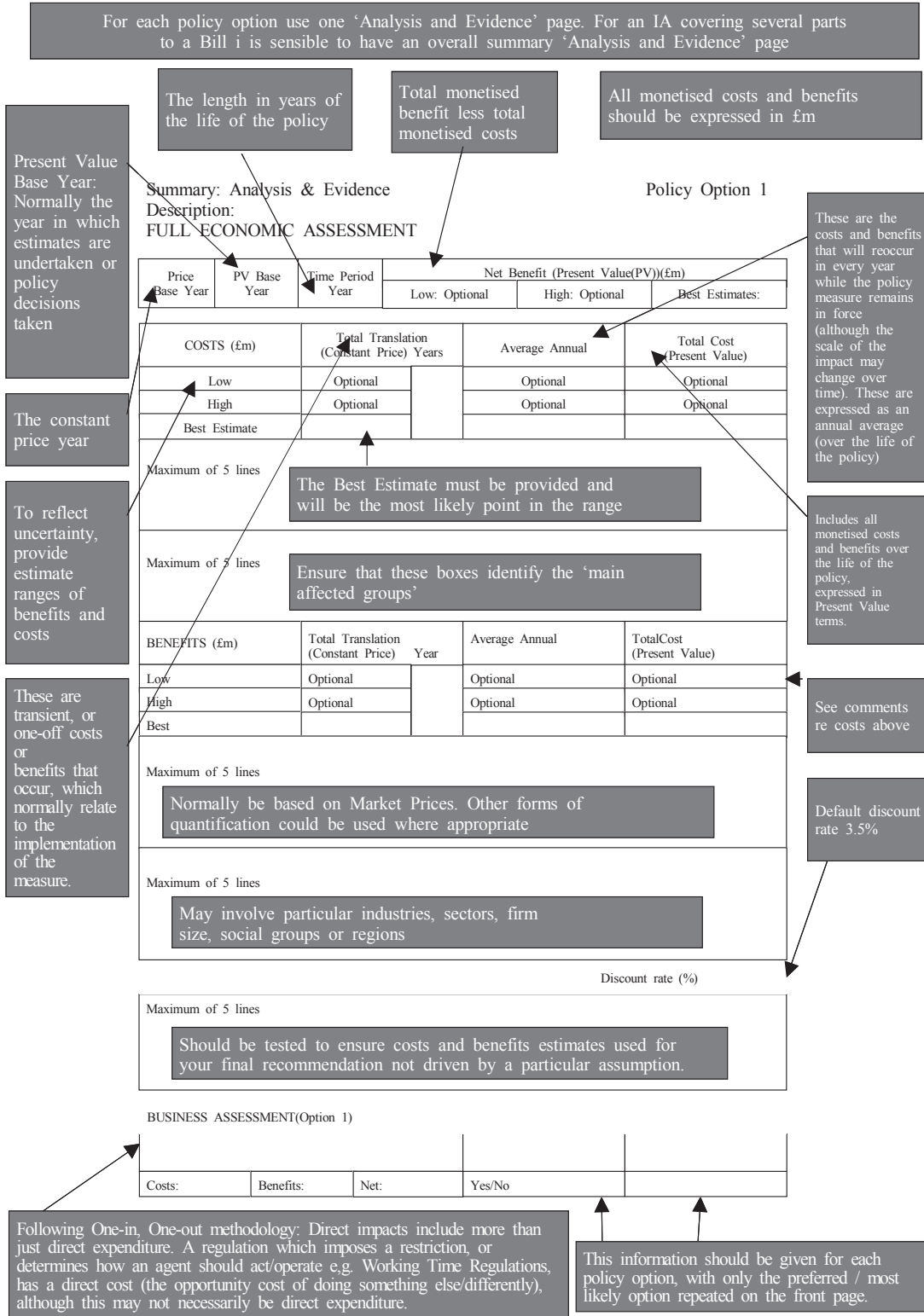
80)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p.3

[그림] 영향평가서 작성방법(how to complete an impact assessment template)⁸¹⁾



8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etter-regulation-framework-manual> (최종집속 일, 2015.10.30.);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pp.80-81.

제 2 장 유럽연합 및 영국의 영향평가 툴킷



III.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연합과 영국은 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영향평가의 수행을 돕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이나 가이드스 내에 툴킷 및 툴박스를 만들어 해당 업무의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2005년 영향평가 가이드라인(Impact Assessment Guidelines)을 통해 영향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구성하였고, 2009년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영향평가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2015년 규제개선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변경하여 그 안에서 툴박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2007년 영향평가 가이드스(Impact Assessment Guidance) 및 툴킷(Impact Assessment Toolkit)을 발표하였으며⁸²⁾ 2011년에는 개정된 영향평가 가이드스를 통해 영향평가의 전반적인 내용을 수정하였으며,⁸³⁾ 2015년 3월 새로운 규제개선 매뉴얼(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을 공표하였다.⁸⁴⁾

이와 같은 문서들을 통해 우리는 입법평가 툴킷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입법평가 툴킷 문서에서 입법평가의 목적, 입법평가의 방법, 입법평가의 절차 및 체크리스트, 입법평가서의 작성 등 입법평가 전반에 걸친 단계들을 안내함으로써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업무의 내용을 숙지시키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일종의 가이드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법평가 툴킷을 통해서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억제하는 역할을 기대

82) <http://bre.berr.gov.uk/regulation/ria/toolkit>(해당 홈페이지 주소는 박영도·한귀현,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VI)-영국의 영향평가제도(개정판)-, 한국법제연구원, 2007, 11면에서 재인용하였으나 현재는 접속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83) HM Government, Impact Assessment Guidance-When to do an Impact Assessment-, 2011. 8(장민선, 앞의 보고서, 23면에서 재인용)

84)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68831/bis-13-1038-Better-regulation-framework-manual.pdf, 최종접속일 2015.10.30.)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고 입법평가를 수행하게 되면, 업무담당자의 개개인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달라지거나 각기 다른 수행방식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업무의 진행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고, 업무의 범위 및 방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해당 업무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입법평가의 특성상 주관적 개입이 추가되면 자칫 평가 자체의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툴킷을 통해서 입법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

제 3 장 입법평가 툴킷 개발에 관한 구상

I. 입법평가 툴킷의 의의 및 필요성

1. 입법평가 툴킷의 의의

입법평가 툴킷은 유럽연합과 영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입법평가 실무 안내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입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담당자가 입법평가가 무엇인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수행하여야 하는지를 실무적으로 안내하는 지침서이다.

기존의 입법평가 가이드라인이나 체크리스트는 입법평가에 대하여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나열하는 방식이었다면, 입법평가 툴킷은 보다 종합적이고 상세하게 제공되는 실무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평가 툴킷을 통해 입법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관계자 등이 입법평가 실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입법평가의 절차 및 단계를 예상하고,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해당 법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지 예상가능하게 해 준다.

2. 입법평가 툴킷의 필요성

입법평가는 “일반적으로 입법적 성격을 지닌 국가적 조치에 대한 평가”⁸⁵⁾를 말한다. 즉, 입법적 조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유럽연합,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입법평가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활발해졌다.⁸⁶⁾

85) 박영도, 입법학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7, 33면.

86) 최윤철, 입법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28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10;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최윤철·홍완식,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5.

입법평가는 입법의 홍수 현상을 방지하고, 입법의 과잉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제도이다.⁸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평가 툴킷에 대한 필요성은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⁸⁸⁾ 이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가 입법평가의 절차나 단계를 실무담당자가 쉽게 접근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점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입법평가는 한 사람이 단시간에 수행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틀이 제공되지 않으면 절차상 혼란이 생길 여지가 많다. 동시에 입법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이나 사고가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더욱이 일정한 방법과 단계를 안내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입법평가의 툴킷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Ⅱ. 국내 입법평가 툴킷 개발을 위한 과제

1. 입법평가의 범위

입법평가의 전체적인 단계를 담고 있는 툴킷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평가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규

87) 다만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근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현숙·윤계형·최유·배건이·백옥선,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I, 한국법제연구원, 2015, 참고할 것.

88) 관련 논의에서 ‘툴킷’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입법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나 지침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김대회 외, 입법평가 기준과 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강현철, 입법평가 세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홍완식, 입법(규제)영향분석 모형 및 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14 등이 있음

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제7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제15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제10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제9조) 및 환경영향평가(제27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제15조) 등 각종 영향분석·영향평가 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제도들을 입법평가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서 통합적인 평가 절차를 구상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는 별개로 규범분석만을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구상할 것인지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결국 입법평가의 제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입법평가 툴키트 개발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쟁점일 수밖에 없다.

2. 입법평가의 주체

입법평가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에 따라 입법평가의 종류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이나 법령입안심사 등과 같은 절차와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려는 그 주체가 확정되고 나서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입법평가를 실시한다고 가정하였을 때만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회에서 입법평가를 실시한다고 하였을 때는 위와 같은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입법평가의 주체가 국회라면, 현재 국회 내부에서 법안을 검토하는 방식 중 하나인 상임위원회에서의 검토보고서와 입법평가를 어떠한 관계로 설정할 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입법평가제도를 현재의 입법절차-국회와 정부에서의-에서 담당주체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에 따라 입법평가 항목과 그 내용은 달라지므로, 먼저 입법평가의 주체를 정한 이후에 입법평가의 툴키트 항목이나 내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3. 입법평가의 단계 및 항목

입법평가 툴킷에서는 입법평가의 단계를 설정하고 그 단계별로 분석할 항목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입법영향에 대한 분석 리스트를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⁸⁹⁾ 그 분석항목을 3단계로 진행되도록 하고, 1단계는 예/아니오의 간단한 평가, 2단계는 예/아니오에 대한 근거 제시, 3단계는 분석사항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적도록 하고 있다.⁹⁰⁾

[표] 자체 분석리스트⁹¹⁾

분석항목	분석사항	평 가
1. 필요성	필요한 법률인가?	○ ×
2. 합헌성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 ×
3. 체계성	다른 법률과의 모순·충돌이 없는가?	○ ×
4. 실효성	입법 목적을 적절한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 ×
5. 형평성	입법을 통한 피해집단은 없는가?	○ ×
6. 명확성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
7. 안전성	법률이 개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가?	○ ×
8. 지속성	법률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합한가?	○ ×

89) 홍완식, 입법(규제)영향분석 모형 및 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14, 140면 이하.

90) 홍완식, 앞의 보고서, 140면.

91) 홍완식, 앞의 보고서, 140면.

또한 자체 분석리스트의 2단계 및 3단계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⁹²⁾

[표] 자체 분석리스트(2단계 및 3단계)⁹³⁾

분석항목	분석사항
1. 필요성	헌법의 기본원칙과 제도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소급입법을 통하여 부당하게 기득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가?
2. 합헌성	관련 기본법이나 관련 법률, 관련 조약이나 국제규범 등이 있는가? 관련 법률 등과는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 다른 법률을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히 인용하였는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가? 위임의 형식이나 범위는 적절한가?
3. 체계성	입법의 취지와 목적이 법률안의 내용에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규제적 내용이 있을 경우에, 해당 규제는 적절하고 효율적인가? 법률의 시행을 위한 비용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 법률 시행을 통한 효용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가? 비용과 효용의 관계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이러한 비용의 지출은 국가적으로 필요한가? 입법은 국민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초래하는가? 법률은 집행가능한가? 법률 집행에 있어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법률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점은 무엇인가?

92) 홍완식, 앞의 보고서, 144면.

93) 홍완식, 앞의 보고서, 140면.

제 3 장 입법평가 툴킷 개발에 관한 구상

분석항목	분석사항
4. 실효성	입법의 취지와 목적이 법률안의 내용에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규제적 내용이 있을 경우에, 해당 규제는 적절하고 효율적인가? 법률의 시행을 위한 비용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 법률 시행을 통한 효용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가? 비용과 효용의 관계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이러한 비용의 지출은 국가적으로 필요한가? 입법은 국민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초래하는가? 법률은 집행가능한가? 법률 집행에 있어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법률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점은 무엇인가?
5. 형평성	해당 입법으로 인하여 피해나 차별을 받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는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단체는 어디이고 이유는 무엇인가? 규제완화로 이익을 보는 측과 손해를 보는 측이 존재하는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을 내용으로 하지는 않는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가? 적극적 우대조치가 필요한 경우의 내용이나 정도는 적절한가?
6. 명확성	가능한 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문장이 길거나 구조가 난해하여 이해할 수 없지는 않은가? 한자식이나 일본어식의 용어가 잇는가? 영어 등 외래어를 불필요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번역투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가?
7. 안전성	법률안의 내용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가? 법률안이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나 조치를 부적절하게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가? 법률안이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분석항목	분석사항
8. 지속성	법률안이 어떠한 장기적인 효과를 갖는가? 법률안의 내용이 다음 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 특히 현 세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는가?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공동으로 이용해야 할 자원과 환경 등을 보호하고 있는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가?

위의 체크리스트 항목을 보면 1단계의 분석항목과 2단계 및 3단계의 분석항목이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1단계에서는 분석사항을 체크만 하고, 2단계에서 분석사항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단계별로 구분하여 항목을 만들어 입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게 하였다라는 점은 매우 유용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1단계의 포괄적 항목에서는 “x”로 나타났지만, 2단계의 세부항목에서는 해당하는 경우 항목 간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고민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또한 2단계의 8가지 항목, 즉 필요성, 합헌성, 체계성 등에 대한 판단 근거를 헌법·법률·조약·문헌·통계 등으로 제시하도록 한 바,⁹⁴⁾ 위와 같은 항목들에 대한 판단을 ○ 또는 ×로 답한 이유를 간단하게 근거를 들어 서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입법평가서의 작성

마지막으로 입법평가의 담당자가 입법평가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개인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고, 입법평가서 작성의 편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입법평가서의 양식과 작성요령을 입법평가 툴킷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94) 홍완식, 앞의 보고서, 146면.

기존에 입법평가서의 작성에 관하여 선행연구가 진행된 바, 여기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장단점을 분석하여 보완할 항목이나 추가할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입법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해당 보고서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작성할 수 있는 사전평가서와 사후평가서의 양식을 제시한 바 있다.⁹⁵⁾ 이 양식의 경우에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구분하여 입법평가서의 서식을 별도로 제시하였으며, 평가서 안에 평가대상과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서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도는 규범이나 가이드라인 형식이 아닌 실무적인 서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선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입법평가의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 주관적인 서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작성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 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또한 입법평가의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나 이유가 평가서에는 나타나지 않아 대상 선정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

입법평가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위의 해외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특정한 입법이나 규제에 문제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문제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 입법평가를 수행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 결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입법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담당자의 주관적인 요소를 가급적 배제하면서, 입법평가의 대상 선정 단계부터 평가의 결과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95) 김대희 외, 입법평가 기준과 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206면 이하에서는 사전평가서와 사후평가서, 평가대상별 세부 평가 내용, 입법평가 결과 통보서를 제시하고 있다.

[표] 사전평가서⁹⁶⁾

※ 관리번호	사전평가 기본자료 및 개요		
법령명	000안 (※ 제정, 전문/일부개정 등이 드러나도록 기술)		
소관부처 및 작성자	000부 000국 000과 국장 000, 과장 000 등, 전화번호 기재		
입법일정	부처협의	대상부처	※ 법안 주요내용 중심 관련 부처 기술
		협의기간	200 . . . - 200 . . . (10일간)
		협의결과	※ 협의결과의 주요 내용을 요약 기술하 되,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할 것 · 000부: ---이견이 있어 협의 반영 · 000부: ---이견이 있었으나, 미반영
	입법예고	예고기간	200 . . . - 200 . . . (20일간)
		예고결과	※ 예고결과의 주요 내용을 요약 기술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할 것 · 협회: --한 의견이 있었으나, 미반영 · 단체: --한 의견이 타당하여 반영
	기타 의견 수렴 절차	공청회/ 토론회 등	개 요
주요내용			※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 기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할 것
평가대상	1. 0000 제도 도입(안 제0조) 2. 과징금 부과(안 제0조) 3. 이행강제금 부과(안 제0조) ※ 법령안 내용 중 사전평가를 실시할 주요 내용을 선별하여 기술		

96) 김대희 외, 앞의 보고서, 206면.

제 3 장 입법평가 툴킷 개발에 관한 구상

※ 관리번호	사전평가 기본자료 및 개요		
평가기준	안 제0조	※ 평가기준을 선정하여 열거하되, 중점 평가기준을 적시함 ※ 개별적으로 추가 적용할 평가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도 명시	
	안 제0조	-	
	안 제0조	-	
평가방법 <input type="checkbox"/> 외부위탁 <input type="checkbox"/> 직접수행 (※ 해당 사항에 √ 표시)	안 제0조	입법 필요성	※ 평가기준별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기술(이하 같음) (예) 필요성 심사, 비교법 등
		효율성/효과성	(예)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등
		부패, 성별 등에 미치는 영향	-
		실효성	-
	안 제0조	-	-
	안 제0조	-	-
평가 결과	안 제0조	※ 각 평가기준별 평가 결과와 그를 종합한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 적시 (예) 입법의 필요성과 효율성은 높으나, 그 실효성이 낮음. 그러나 실효성은 적극적인 홍보 및 예산·인력의 추가 확보 조치가 해결되면 제약요소를 대부분 극복 가능	
	안 제0조	-	
	안 제0조	-	

[표] 사후평가서⁹⁷⁾

※ 관리번호	사후평가 기본자료 및 개요	
법령명	000법률(시행령, 시행규칙) (※ 법형식이 드러나도록 기술)	
작성 부서 및 작성자	입법평가위원회 사무국 000팀 팀장 000 등, 전화번호 기재	
관련 부서 및 담당자	000부 000국 000과 과장 000 등, 전화번호 기재	
평가대상	1. 정기적성검사제도(안 제0조) 2. 과징금제도(안 제0조) ※ 법령안 내용 중 사후평가를 실시할 평가대상을 확정하여 기술	
사전평가의 주요 내용	평가기간	※ 평가대상별로 사전평가를 한 기간 명시하되, 사전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없 음’으로 기재 1. 정기적성검사제도 - 200 . . . - 200 . . . (00일간) 2. 과징금제도 : 해당 없음
	주요 내용	※ 사전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과 관련 주요 통계 치를 평가대상별로 요약하여 기술 1. 정기적성검사제도
평가기준	안 제0조	※ 평가기준을 선정하여 열거하되, 중점 평가기준 을 적시(이하 같음) 1. 정기적성검사제도 - 입법의 실효성, 효과성/효율성, 문제점/부작용 - 입법의 실효성과 효과성 중심으로 평가 - 그 외 추가 적용할 평가기준을 선별(비용) ※ 개별기준은 필요에 따라 추가 여부 선택 가능
	안 제0조	-

97) 김대희 외, 앞의 보고서, 208-209면.

제 3 장 입법평가 툴킷 개발에 관한 구상

※ 관리번호	사후평가 기본자료 및 개요		
평가방법	안 제0조	입법 실효성	※ 평가기준별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기술(이하 같음) (예) 실무데스트, 전문가 자문 등
		효율성/ 효과성	(예)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등
		문제점/ 부작용	(예) 문제점·요인 분석 등
		비 용	(예) 비용분석, 비교법 등
	안 제0조	-	-
평가 결과	안 제0조	※ 각 평가기준별 평가 결과와 그를 종합한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 적시 (예) 입법의 실효성이 적고 그 효과도 낮아 해당 규정은 삭제하거나 적어도 그 검사 주기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안 제0조	-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항목을 배경 및 필요성의 분석, 분석 대상 및 방법의 확정, 입법영향의 분석,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로 구분하여 작성 내용을 정하여 활용하고 있다.⁹⁸⁾ 이 작성방식의 경우에는 항목을 구분하여 보고서를 통일성있게 갖춘다는 면에서

98) 물론 이 경우에는 실무적인 ‘입법평가서’라기 보다는 ‘연구보고서’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하는 이유는, 아직 국내에서 입법평가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입법평가를 입법절차 내에서 해당 공무원(입법부나 행정부)이 담당할 수도 있겠지만 제3의 기관(학자, 연구자)이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입법평가서(입법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는 장점을 가지지만, 입법의 영향-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 등-을 측정하여 작성하고자 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평가실무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주관적 개입이 많은 영역이므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의 설정은 필수적이다.

[표]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의 작성⁹⁹⁾

구 분	항 목	작성 내용
배경 및 필요성의 분석	배경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대상 법률의 입법연혁 등을 조사함 ○ 분석대상 법률이 제정·개정된 사회적 배경과 입법목적
	필요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성: 예상되는 또는 관찰된 입법영향의 크기와 범위 ○ 시의성: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시기의 적절성 ○ 입법영향에 대한 논란의 존재
분석 대상 및 방법의 확정	분석대상 법률(안)의 확인과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개정·폐지·신설·삭제 등의 이유 ○ 신규 조문의 대비 ○ 해당 법률(안)의 의도와 해석상 예상되는 결과 사이에 차이 여부 ○ 법률의 발효시점과 그에 따른 결과 등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의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연구의 검토 ○ 자료의 성격(자료의 한계 포함)과 수집방법 검토 ○ 자료의 성격과 분석목적 따라 적합한 분석방법을 선택

99)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업무편람, 2012, 25면 이하(심우민, 의회 입법영향분석 가이드라인 구상, 입법평가연구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2014, 203면에서 재인용).

제 3 장 입법평가 툴킷 개발에 관한 구상

구 분	항 목	작성 내용
입법영향의 분석	법체계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적합성 분석 ○ 체계 내적 정합성 분석 ○ 체계 외적 정합성 분석 ○ 비교법적 분석(선택적)
	입법영향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정책의 합목적성 및 목표달성도 ○ 입법정책 수단의 적합성 및 효율성 ○ 입법정책이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	개선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영향분석 결과로부터 논리적으로 입법·정책 개선방안 도출 ○ 대안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부작용, 이해관계자의 반응 등을 면밀히 검토

정리하자면, 입법평가서는 입법평가제도의 모습에 따라 입법평가실 무서의 형식이 될 수도, 입법평가 (연구)보고서의 형식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어떠한 형태의 입법평가제도가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입법평가서의 형식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입법평가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입법평가의 체계성 및 통일성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므로, 입법평가의 전반적인 결과가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입법평가서에 있어서는 작성자가 간소하고 편하게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여야 한다. 행정부담을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절차에서 오히려 행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4 장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과 유럽연합의 입법평가 툴킷(툴박스)는 입법에 대한 영향평가 절차·단계에 대한 실무안내서라고 볼 수 있다. 툴킷을 통해서 입법평가의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할 입법사무, 체크사항, 평가방법 등을 확인하고 입법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입법평가 가이드라인이나 안내서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문서라고 볼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사람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도구라고 보여진다.

국내에서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입법평가가이드라인, 입법평가 지침, 입법평가 체크리스트에 관하여 몇 차례 진행된 바 있다. 기존에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에 대한 평가의 요소나 절차들 - 예를 들어, 규제영향분석, 법령입안심사, 의안 검토보고 등 - 이 현재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온 것은 현행 제도 및 절차 외에도 입법에 대한 심사 내지는 평가를 보다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보다 나은 법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입법평가제도와 관련한 논의들이 진행되면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현행 유사제도들과의 중복성·유상성 문제를 해결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평가제도를 디자인하기 위하여는 툴킷을 개발하여 단계를 조정하고 단계별 세부사항들을 구성하여 하나의 절차적 제도를 완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입법 관련 절차들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우선 기관 별로 구분하여 보면, 국회에서의 입법평가 툴킷, 정부에서의 입법평가 툴킷을 각각 개발하여 의원입법인 경우 법안작성에서부터 법안제출

단계까지 개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검토보고와 심사보고를 어떻게 절차 안에 포섭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 법령입안심사 등 기존의 유사한 절차들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종합적으로 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되었던 입법평가 관련 지침과 체크리스트들을 종합하고, 단점들을 보완하여 입법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툴키트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입법평가 툴키트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입법평가 관련 지침과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입법평가 툴키트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에 담겨질 요소들을 구상하는데 그쳤지만, 향후 입법평가의 제도 시행이 구체화되고 입법평가의 주요 내용-주체, 담당기구, 범위 등-이 확정된다면 실제로 입법평가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입법평가 툴키트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현철 · 이근주 · 김수용, 입법평가와 정책평가의 비교고찰 및 관계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 강현철, 입법평가 세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 강현철 · 원소연,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한국법제연구원, 2012
- 김대희 외, 입법평가 기준과 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 김수용, 입법평가의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 김수용, 좋은 법을 위한 입법평가 연구의 과제와 논의방향, 입법평가연구 제6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
- 김주영, 미국 의회의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입법평가연구 제3호, 한국법제연구원, 2010.9.30.
- 김주찬 외,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규제영향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0
- 김현수,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미국의 의회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2
- 김현수,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입법평가 비교제도론1: 미국 · 캐나다-, 한국법제연구원, 2013
- 박수현,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9
- 박영도,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법제 통권 제531호, 법제처, 2002

참 고 문 헌

- 박영도 외, 주요국가의 입법평가관련제도(I)~(V), 한국법제연구원, 2007
- 박영도, 입법평가에서의 규제비용 측정기법 연구-스위스 건축법의 사례-, 한국법제연구원, 2014
- 박영도, 일본의 입법학연구 동향과 시사점, 입법평가연구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2014
-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 박영도, 입법평가제도의 전망과 발전방향, 입법평가연구 제2호, 한국법제연구원, 2010
- 박영도 · 한귀현,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VI)-영국의 영향평가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7
- 박영도, 입법학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7
- 배건이,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입법평가 비교제도론3: 독일 · 스위스-, 한국법제연구원, 2013
- 배건이, 독일의 「연방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사례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 신상환, 독일의 입법과정상 입법평가적용의 구체적 사례분석 및 조망을 통하여 본 한국입법평가의 발전과제, 법제 통권 제540호, 법제처, 2002
- 원소연, 독일 입법평가조직의 성격과 권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원소연,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독일 연방행정부의 입법평가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2
- 윤광진 · 김한창 · 박계관, 입법평가적용을 위한 비용편익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 윤계형,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유럽연합-, 한국법제연구원, 2012
- 윤계형, 유럽연합의 입법절차와 영향평가, 입법평가연구 제5호,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윤계형·한동훈, 프랑스 입법평가의 방법론 및 사례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윤계형,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와 규제적합성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입법평가연구 제8호, 한국법제연구원, 2014
- 윤계형·박통희, 김주찬, 홍완식, 입법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 이상윤, 일본 정책평가제도의 입법평가적 기능, 한국법제연구원, 2009
- 이순태·윤광진·차현숙·윤석진·윤계형·조용준·조영기, 입법평가 가이드라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 이준호, 영국의 규제개혁 동향-규제개혁 보고서를 중심으로-, 최신의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09
- 장민선,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영국의 영향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2
- 장민선,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입법평가 비교제도론2: 유럽연합·영국-, 한국법제연구원, 2013
- 정창화, 독일의 입법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 조영기, 입법평가를 위한 설문조사기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 차현숙·배건이, 독일 「정보보호법의 영향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지침」에 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 차현숙, 의원입법의 입법평가와 평가방법론에 관한 소고, 한국법제연구원, 2010

참 고 문 헌

- 차현숙·최혜선, 지방의회 조례 입법평가 도입을 위한 표준조례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 차현숙·윤계형·최유·배건이·백옥선,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I, 한국법제연구원, 2015
- 최유진, 입법과정상의 영향평가제도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1
- 최윤철, 독일에 있어서의 “입법자의 법률개선 의무”에 관한 논의,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3.03
- 최윤철, 독일과 스위스의 입법평가 사례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 최윤철·차현숙, 환경가치추정 기법의 입법평가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 최윤철, 입법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28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10
- 최윤철·홍완식,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5
- 한동훈, 2008년 프랑스 헌법개정과 프랑스의 영향평가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9
- 한동훈, 프랑스의 영향평가의 기준틀과 적용사례, 입법평가연구 제4호, 한국법제연구원, 2011
- 홍완식, 입법자의 법률개선 의무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1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02.12
- 홍완식, 독일의 입법평가: 독일 국가규범통제원의 활동과 성과를 중심으로, 입법평가연구 창간호, 한국법제연구원, 2009

홍완식 외, 입법(규제)영향분석 모형 및 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14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업무편람, 2012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입법평가 비교제도론4: 프랑스-, 2013

2. 해외 문헌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 March 2015

European Commission, COM(2002)275, Better Lawmaking, Brussels, 2002

European Commission, Regulatory Fitness and Performance Programme (REFIT): State of Play and Outlook, COM(2014) 368 final, 2014

European Commission, Better Regulation Guideline, 2015.5.19

HM Government, Impact Assessment Guidance-When to do an Impact Assessment-, 2011

Philip Hampton,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 effective inspection and enforcement, HM Treasury, March 2005

3. 인터넷사이트

□ 유럽연합 홈페이지

http://ec.europa.eu/governance/impact/docs/key_docs/com_2005_0518_en.pdf

http://ec.europa.eu/governance/impact/planned_ia/planned_ia_en.htm

http://ec.europa.eu/priorities/docs/pg_en.pdf

참 고 문 헌

http://ec.europa.eu/atwork/key-documents/index_en.htm

http://ec.europa.eu/smart-regulation/impact/commission_guidelines/docs/iag_2009_en.pdf

http://ec.europa.eu/smart-regulation/guidelines/docs/swd_br_guidelines_en.pdf

영국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better-regulation-framework-manual>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magenta-book>